

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

제1조 [특약의 체결 및 소멸]

제2조 [특약의 적용범위]

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3조 [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납입]

제3관 기타 사항

제4조 [주계약 약관의 준용]

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1조 [특약의 체결 및 소멸]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, 보험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보험회사는 “회사”라 합니다)
-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 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용어해설

[보장개시일]

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.

제2조 [특약의 적용범위]

이 특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에 적용합니다.

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3조 [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납입]

- 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금융회사(우체국 포함)를 통하여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.

제3관 기타 사항

제4조 [주계약 약관의 준용]

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